화 성 시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.

시 보

선람	기관의 장

제 205호

2026년 11월 5일 (목)

차 례

공 고

화성시 공고 제2026-3626호 공원조성계획 결정(안) 입안 공람공고-기안2지구 어린이공원, 소공원1,2호

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-1183호 2026년 제3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청문(현장검토) 결과 공시송달 공고

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-1184호 2026년 10월 주민세(개인분)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
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-1186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[장안 제2026-107호]

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-1187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[장안 제2026-108호]

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-353호 2026년 10월 주민세(개인분)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
고 시

화성시 고시 제2026-870호 동탄(1)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(공원) 실시계획(변경) 작성 고시 [2026년 반석산 산책로 정비사업]

회람									

발행 : 화 성 시 편집 : 언론담당관

화성시 공고 제2026- 3626호

공원조성계획 결정(안) 입안 공람 · 공고

화성시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(안)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· 공고합니다.

2026. 11. 5.

화 성 시 장

1.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내용

가. 공원개요

■ 명칭 : 도시계획시설(공원)

■ 위치 및 면적

시설구분	공원명	위 치	결정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어린이공원	기안2지구어린이공원	화성시 기안동 283번지 일원	4,633.0	화성시 고시 제2026-56호 (2026. 1. 29.)	
소공원	기안2지구 소공원1	화성시 기안동 291번지 일원	1,525.0		
소공원	기안2지구 소공원2	화성시 기안동 272번지 일원	3,753.0		

나. 조성계획(변경) 사유

■ 기안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,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·휴식 활동을 지원하고,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조성계획(변경) 입안

시설의세분	공원명	위 치	부지면적(㎡)	시설면적(㎡)	시설비율(%)	비고
어린이공원	기안2지구어린이공원	화성시 기안동 283번지 일원	4,633.0	2,061.8	44.5	
소공원	기안2지구 소공원1	화성시 기안동 291번지 일원	1,525.0	267.0	17.5	
소공원	기안2지구 소공원2	화성시 기안동 272번지 일원	3,753.0	678.3	18.1	

※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)

라. 조성계획 세부 조서(안)

■ 기안2지구어린이공원

구분	부호	시설명	부지면적(㎡)	규모/수량	구성비(%)	건축물		비고
						바닥면적(㎡)	연면적(㎡)	
합계			4,633.0	38기	100	33.3	33.3	
시설합계			2,061.8	38기	44.5	33.3	33.3	
기반시설	소계		1,281.9	14기	27.7	-	-	
	-	도로	832.5	13기	18.0	-	-	
	①	슬로프	-	1기	-	-	-	
	②	계단	-	1기	-	-	-	
	③	플랜터	-	1기	-	-	-	
	④	등의자	-	10기	-	-	-	
	1-1	중앙광장	449.4	1기	9.7	-	-	
	⑤	연식파고라	-	1기	-	-	-	
조경시설	소계		50.3	1기	1.1	-	-	
	2-1	바닥분수	50.3	1기	1.1	-	-	
휴양시설	소계		250.3	14기	5.4	-	-	
	3-1	데크쉼터	79.2	5기	1.7	-	-	
	⑥	데크	-	1기	-	-	-	
	⑦	야외테이블	-	4기	-	-	-	
	3-2	휴게쉼터-1	115.2	8기	2.5	-	-	
	⑧	파고라	-	2기	-	-	-	
	⑨	평의자	-	6기	-	-	-	
	3-3	휴게쉼터-2	55.9	1기	1.2	-	-	
	⑩	티하우스A	-	1기	-	-	-	
유희시설	소계		398.8	7기	8.6	-	-	
	4-1	놀이터	398.8	7기	8.6	-	-	
	⑪	어린이파고라	-	1기	-	-	-	
	⑫	티하우스B	-	1기	-	-	-	
	⑬	조합놀이대	-	1기	-	-	-	
	⑭	시소	-	1기	-	-	-	
	⑮	흔들놀이대	-	2기	-	-	-	
	⑯	그네	-	1기	-	-	-	
운동시설	소계		32.8	1기	0.7	-	-	
	5-1	체력단련장	32.8	1기	0.7	-	-	
	⑰	종합체력단련시설	-	1기	-	-	-	
면익시설	소계		47.7	1기	1.0	33.3	33.3	
	6-1	화장실	47.7	1기	1.0	33.3	33.3	
녹지 및 기타	소계		2,571.2	-	55.5	-	-	
	-	녹지	2,571.2	-	55.5	-	-	

■ 소공원1호

구분	부호	시설명	부지면적(㎡)	규모/수량	구성비(%)	건축물		비고
						바닥면적(㎡)	연면적(㎡)	
합계			1,525.0	13기	100.0	-	-	
시설합계			267.0	13기	17.5	-	-	
기반시설	소계		261.0	12기	17.1	-	-	
	-	도로	223.9	8기	147	-	-	
	①	등의자	-	2기	-	-	-	
	②	신발장	-	1기	-	-	-	
	③	안내판	-	1기	-	-	-	
	④	비가림	-	1기	-	-	-	
	⑤	앉음벽	-	1기	-	-	-	
	⑥	날개벽	-	2기	-	-	-	
	1-1	진입광장	37.1	4기	2.4	-	-	
	⑦	파고라	-	1기	-	-	-	
	⑧	평의자	-	3기	-	-	-	
관리시설	소계		6.0	1기	0.4	-	-	
	2-1	세족장	6.0	1기	0.4	-	-	
	⑨	세족장	-	1기	-	-	-	
녹지 및 기타	소계		1,258.0	-	82.5	-	-	
	-	녹지 및 기타	1,258.0	-	82.5	-	-	

■ 소공원2호

구분	부호	시설명	부지면적(㎡)	규모/수량	구성비(%)	건축물		비고
						바닥면적(㎡)	연면적(㎡)	
합계			3,753.0	20기	100.0	-	-	
시설합계			678.3	20기	18.1	-	-	
기반시설	소계		598.0	11기	15.9	-	-	
	-	도로	598.0	11기	15.9	-	-	
	①	계단A	-	1기	-	-	-	
	②	계단B	-	1기	-	-	-	
	③	슬로프	-	1기	-	-	-	
	④	등의자	-	8기	-	-	-	
휴양시설	소계		38.9	8기	1.1	-	-	
	1-1	휴게쉼터	38.9	8기	1.1	-	-	
	⑤	파고라	-	2기	-	-	-	
	⑥	평의자	-	6기	-	-	-	
관리시설	소계		41.4	1기	1.1	-	-	
	2-1	체력단련장	41.4	1기	1.1	-	-	
	⑦	종합체력단련시설	-	1기	-	-	-	
녹지 및 기타	소계		3,074.8	-	81.9	-	-	
	-	녹지 및 기타	3,074.8	-	81.9	-	-	

마. 도로 결정 세부 조서

■ 기안2지구어린이공원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면적(㎡)	기능	기점	종점	비고
합계				-	-	832.5	-	-	-	
신설	산책로	-	1	2.0	29.7	71.7	진입로	남측	산책로4	
신설	산책로	-	2	2.0	10.1	21.4	진입로	남동측	산책로4	
신설	산책로	-	3	0.6	22.4	15.3	연결로	휴게쉼터-2	데크쉼터	
신설	산책로	-	4	3.0	103.9	333.5	연결로	남측	산책로4	
신설	산책로	-	5	3.0	39.3	111.7	연결로	광장	산책로4	
신설	산책로	-	6	2.8	9.5	27.6	진입로	북동측	산책로4	
신설	산책로	-	7	2.0~3.0	90.2	219.2	연결로	산책로4	산책로4	
신설	산책로	-	8	2.0	12.4	32.1	진입로	서측	산책로7	

■ 소공원1호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면적(㎡)	기능	기점	종점	비고
합계				-	-	223.9	-	-	-	
신설	산책로	-	1	1.8	21.6	42.1	진입로	어린이 놀이터	진입광장	
신설	산책로	-	2	2.0	22.2	52.0	연결로	산책로1	산책로4	
신설	산책로	-	3	1.5	10.3	17.2	진입로	진입광장	산책로2	
신설	산책로	-	4	2.0	74.5	112.6	진입로	산책로2	산책로4	

■ 소공원2호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면적(㎡)	기능	기점	종점	비고
합계				-	-	597.6	-	-	-	
신설	산책로	-	1	1.8	44.8	100.1	진입로	북서측	산책로4	
신설	산책로	-	2	2.0	47.2	100.6	연결로	산책로4	북동측	
신설	산책로	-	3	1.5	5.0	9.6	진입로	북측	산책로2	
신설	산책로	-	4	2.0	64.0	139.4	진입로	북서측	산책로5	
신설	산책로	-	5	1.5	75.7	123.2	연결로	산책로2	남동측	
신설	산책로	-	6	2.0	9.4	20.7	진입로	산책로5	산책로7	
신설	산책로	-	7	1.5	67.5	104.0	연결로	산책로2	산책로5	

2. **열람장소 :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**

3. **열람기간 : 2026. 11. 6. ~ 2026. 11. 20. (공보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)**

4. **의견제출 :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당해 공원조성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가. 의견제출처 :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(도이리 산31-6번지) 화성종합경기타운
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(FAX:031-5189-1521),(E-mail:js0301@korea.kr)

나. 문의사항 :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(☎ 031-5189-6122)

화성시 만세구 제2026- 118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33조 1항 및 「화성시 도시계획조례」제24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허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6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 결과(취소유예 및 취소)를 수허가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'폐문부재'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(공고)합니다.

1. **처분의 제목 :** 2026년도 제3차 청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처분 결과(취소유예 및 취소)
2. **허가내용 및 결과**
 ※ 붙임파일 참고(취소유예 기간 2027. 10. 31.까지 유예)
3. **공고기간 :** 2026. 11. 5.(목) ~ 2026. 11. 19.(목)
4. **게시장소 :** 화성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5. **기타사항**
 가.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
 나.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다. 기타 문의사항은 만세구 허가민원2과(☏ 031-5189-129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11. 5.

만 세 구 청 장

연번	구분	년도	허가번호	읍면동	리	지 번	성 명	우편물 송달	의견서 제출여부	검토결과	처분(안)
1	변경허가	2018	4011	서신면	홍범리	190-4	주**	0	0	부지 조성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, 유예 후 준공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함	취소유예

•

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-1184호

공 시 송 달

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: 황재* 외 177 (기재내용 별첨)

서류의 송달지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243**, 31**

서류의 명칭: 주민세(개인분) 2026년 10월 독촉고지서

서류의 내용: 주민세(개인분) 2026년 10월 독촉고지서

총 178건, ₩2,016,740원 (기재내용 별첨)

위 서류를 2026년 10월 중 귀하(사)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어 납부 기한 내에 고지서의 송달이 불가하기에,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고하오니, 2026년 11월 30일까지 우리 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전국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거나, 가상계좌 입금, 위택스(www.wetax.go.kr)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

공시송달대상자인지 여부는 유선(031-5189-1145)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6년 11월 19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,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11월 5일

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

■ 도로법 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

화성시 만세구 제2026 - 1186호

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

「도로법」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5일

만세구청장

도로의 종류	시도	노선명	38호선
점용의 목적	상수관로 매설	점용기간	2035.12.31.까지
점용의 장소	석포리 686-27, -28번지	점용면적	일시: 15.0㎡ 영구: 0.25㎡
점용물의 종류	관로	공사기간	착공일로부터 ~ 10일
공사 방법	인력 및 장비	굴착 시 교통대책	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
도로의 복구방법	원인자 복구	도로굴착	차도 굴착
점용자의 주소·성명	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	그 밖의 사항	장안 제2026-107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■ 도로법 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

화성시 만세구 제2026 - 1087호

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

「도로법」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5일

만세구청장

도로의 종류	리도	노선명	209호선
점용의 목적	상수관로 매설	점용기간	2035.12.31.까지
점용의 장소	석포리 686-27, -28번지	점용면적	일시: 15.0㎡ 영구: 0.15㎡
점용물의 종류	관로	공사기간	착공일로부터 ~ 10일
공사 방법	인력 및 장비	굴착 시 교통대책	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
도로의 복구방법	원인자 복구	도로굴착	차도 굴착
점용자의 주소·성명	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	그 밖의 사항	장안 제2026-108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-353호

공 시 송 달

성 명 : 장*용 외 181인

주소 또는 거소 :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4**-* 외 181개소

서 류 의 명 칭 : 2026년 10월 주민세(개인분) 독촉고지서 공시송달

공 고 기 간 : 2026. 11. 5.~ 2026. 11. 19. (14일간)

위의 서류를 2026년 10월 중에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지 등이 불분명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【공시송달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공고하오니, 우리시에서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과세물건을 확인하시고 전국 금융기관 및 CD/ATM기에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(www.giro.or.kr)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병점구 세무과 시세팀(031-5189-412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5일

화성시 병점구청장

화성시 고시 제2026-870호

• 동탄(1)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(공원) 실시계획(변경) 작성 고시
- 2026년 반석산 산책로 정비사업 -

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작성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 실시계획(변경) 작성하고,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합니다.

2026. 11. 5.

화 성 시 장

1.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개요

가. 위치 :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4번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)

○ 명 칭 : 2026년 반석산 산책로 정비사업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결정	6	근린공원 6호	근린공원	석우동 64번지 일원	712,463.7	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15호 (2008. 3. 28.)	
시행	6	근린공원 6호	근린공원	석우동 64번지 일원	150	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실시계획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사 유	비고
변경	6	노작근린 공원	노작공원 내 산책고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	

- 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 - ○ 법인의 명칭 : 화성시장(공원녹지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)
 - ○ 법인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
 - ○ 대표자 성명 : 정명근
 - ○ 대표자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
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- ○ 착공예정일 : 실시계획변경고시일로부터 ~ 6개월
- ○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변경고시일로부터 ~ 6개월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· 지번 ·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· 권리자의 성명 · 주소 : “붙임”

※ 붙 임

1) 총괄토지조서

구분	합 계			국유지			공유지			사유지			비고
	필지수	면적(㎡)	구성비(%)	필지수	면적(㎡)	구성비(%)	필지수	면적(㎡)	구성비(%)	필지수	면적(㎡)	구성비(%)	
합계	6	712,463.7	100.00				6	712,463.7	100.00				
공원	3	670,868.0	94.16				3	670,868.0	94.16				
도로	2	1,086.8	0.15				2	1,086.8	0.15				
유지	1	40,508.9	5.69				1	40,508.9	5.69				

2) 지목별 토지조서

구 분	합 계	공원	도로	유지	비 고
필지수	6	3	2	1	
면적(㎡)	712,463.7	670,868.0	1,086.8	40,508.9	
구성비(%)	100.0	94.1	0.2	5.7	

3) 소유자별 토지조서

구분	합 계			국유지			공유지			사유지			비고
	필지수	면적(㎡)	구성비(%)	필지수	면적(㎡)	구성비(%)	필지수	면적(㎡)	구성비(%)	필지수	면적(㎡)	구성비(%)	
-	6	712,463.7	100.0	-	-	-	6	712,463.7	100.0	-	-	-	

4) 지번별 토지조서

연번	토지 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	편입면적	소 유 자		비고
						성명	주소	
합 계		6필지		712,463.7	712,463.7			
1	반송동	108공	공원	304,627.5	304,627.5	화성시		
2	반송동	108-1도	도로	573.0	573.0	화성시		
3	석우동	64공	공원	351,021.7	351,021.7	화성시		금회시행필지 150㎡
4	석우동	64-1도	도로	513.8	513.8	화성시		
5	석우동	63공	공원	15,218.8	15,218.8	화성시		
6	석우동	63-1유	유지	40,508.9	40,508.9	화성시		

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작성 조건
- 2026년 반석산 산책로 정비사업 -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 실시계획(변경) 개요

사업명칭	2026년 반석산 산책로 정비사업
사업위치	동탄구 석우동 64번지
사업규모	공원 (A=150㎡)
사업시행자	주소: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성명: 화성시장(공원녹지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)
사업기간	인가일로부터 ~ 6개월

□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작성 조건

- 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(변경)과 관련하여 기 협의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련부서(기관)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인·허가, 신고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의 효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.

-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(민·형사상 포함)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.

-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86조,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, 같은법 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,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[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]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.

-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무상귀속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신청 전(약3개월 전) 무상귀속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[인수인계조서, 설계도서 등(관련 서류는 실무부서와 협의)]을 구비하여 무상귀속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☞ **구비서류**

가.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[별지 제10호서식]

나. 준공도서

다. 설계도서

라. 관련부서(기관)협의의견에 대한 이행사항

마. 각 실과소 무상귀속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공문(도로시설, 녹지, 공공공지 시설 등)

바. 무상귀속 시설물 인수인계조서(도로시설, 녹지, 공공공지 등)

사. 무상귀속 시설물(도로, 녹지, 공공공지 등)에 대한 소유권이전 서류

아.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서

※ 구비서류 일체 CD 제출요망

■ 붙임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의견 조치계획